

#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577
----------	------

2026년 6월 1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3월 30일, 윤영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3. 상정일자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6년 6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영희 의원)

#### 1. 제안이유

-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급증에 따른 디지털 과의존 문제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은 학습 집중도 저하와 교육활동 방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결정과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기기 사용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통한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 정의(안 제2조)
- 학교 지도 과정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매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4조)
- 학교생활규정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규정(안 제5조)
- 학교장 및 교원 대상 전문 교육 및 연수 규정(안 제6조)
- 캠페인 및 공로자 표창 근거 마련(안 제 7조·제8조)
- 정부·지자체·관련 기관과의 외부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9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6년 3월 30일 운영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3577호로 발의되어 2026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sup>1)</su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통제력 저하 및 일상생활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특히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저해, 학습 집중력 저하, 사회성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sup>2)</sup>

[그림-1] 연도별·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폰·인터넷 문제적 사용으로 인한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 파악을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정책의 성과 평가와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 정책통계 생산  
 2) 청소년 스마트폰 많이 쓸수록 정신건강 악화(이데일리, 2025.3.4.)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을 둘러싸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학생 인권 보호 간 충돌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표-1]과 같이 학칙으로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왔음.

[표-1]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 학칙 반영 통계 현황 (2025.3. 기준)

(단위: 교)

	등교 시 소지(사용) 가능				등교 시 소지(사용) 불가
	수업 전 일괄 수거	수업시간에만 수거	별도 수거하지 않고, 구두로만 수업시간 사용금지 공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없음	
초(606교)	12	4	574	0	16
중(387교)	284	7	92	0	4
고(318교)	82	25	206	5	0
합계(1311교)	378(28.8%)	36(2.8%)	872(66.5%)	5(0.4%)	20(1.5%)

-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교내 사용을 제한한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온 기존 판단을 변경하여, 해당 조치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일정한 사용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sup>3)</sup>
- 이에 국회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3)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25.4.29.)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음.<sup>4)</sup>

- 이와 같은 사회적·제도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음.(행정관리담당관-4384, 2026.4.7.)

- 스마트기기 ‘소지’에 대한 지도는 소지의 자유 제한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지 자체에 대한 금지 지도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절대 허용될 수 없고,
-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규정을 전제로 한 조례 제정은 법이 폭넓게 인정한 학교가 가지는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이라는 의견임.
- 또한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에 대한 관점이라면, 이는 생활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예방 등 디지털리터러

---

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시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분야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에 대한 근거는 법률(「초·중등교육법」)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은 교내 스마트기의 사용·소지 제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법률안 해설, 학교 협조사항(학칙 개정, 스마트기기 수거 및 보관 방식, 파손·분실 시 대응방안 등),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을 안내한 바 있음.<sup>5)</sup>
- 이는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따라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대하여 교육감의 학교 현장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안은 법률 체계상 상위 법과의 충돌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민주시민교육과-17919, 2025.10.24.)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어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학칙 등 관련 기준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대한 홍보,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구성체계는 실질적 내용에 따라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 지침<sup>6)</sup> 등도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바, 형식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 정의에 관한 검토(안 제2조)

- 안 제2조는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규정”, “스마트기기” 등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2조제3호는 “학생생활지도”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6)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9.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_증보판)’, 법제처, 2024.1.

2제1항에 따라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sup>7)</sup>

○ 안 제2조제4호는 “학생생활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각호에 따르면, 학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sup>8)</sup>, ‘학생생활규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 제2조제4호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2] ‘학교 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li> <li>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li> <li>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li> <li>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li> <li>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li> <li>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li> <li>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li> </ol>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li> <li>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li> <li>9. 학칙개정절차</li> </ol>

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8)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2025 개정판) 194페이지(서울시교육청 발행)

- 안 제2조제5호는 ‘스마트기기’를 정의하면서 일반적인 개념<sup>9)</sup>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유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3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법체계상 타당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 3)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에 관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기준 마련 및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10)</sup>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는 보관함 등 물적 설비, 지도 인력 부담, 학생·보호자 대상 안내 및 갈등 조정 등 행정 수요가 수반될 수 있는바,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운영 기

9) 스마트 장치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무선 통신 프로토콜(블루투스, 직비, 근거리 무선 통신, 와이파이, 니어링크, 라이파이 또는 5G 등)을 통해 다른 장치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어느 정도 대화형이며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자 장치(위키백과)

10)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준 마련 지원에 관한 책무를 부여한 것은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항으로 사료됨.

#### 4)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생·교원·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와 관련된 교육·연수, 자료 개발 등을 일반적인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생활규정 운영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도 방향, 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연수, 시설 및 설비 등 다양한 정책적 요소가 필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형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한 안 제4조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5)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제작·보급(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학교에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

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학교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생활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학교생활규정 길라잡이’ 를 제작·보급하였음.<sup>11)</sup>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법률 해설, 학교 협조사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을 안내한 바 있음.<sup>12)</sup>

다만 이러한 자료는 일회적이고 안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침으로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를 개정·보급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규정 마련을 지원하고 운영상 혼선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조항으로 사료됨.

## 6) 교육·연수(안 제6조)에 대한 검토

- 안 제6조는 교육감에게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 정착,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생활지도 측면에서 생활교육부장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 수업 활용 중심의 교육·연수 과정도 운영하고

11)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2025 개정판,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협조 요청(민주시민교육과-17919, 2025.10.24.)

있음.13)

다만 기존 연수는 생활지도 또는 교수·학습 활용 측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와 관련된 제도 이해, 학생생활규정 반영 방안, 학교 현장 운영 사례 공유 등과 같은 내용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교육감이 학교장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6조는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학교별 운영 편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홍보,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에 관한 검토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 표창,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는 학교 현장의 자율적 운영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향에 대한 학생·교원·보호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생활지도 및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안내뿐 아니라 우수 운영사례 발굴·확산, 자료 보급, 캠페인 및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기여한 개인·학교·기관·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경우, 현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정책 확산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13)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표창 규정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동기를 제고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는 학교뿐 아니라 보호자,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 개선 및 과의존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요구될 수 있음.

이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홍보,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7조 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동 조례안의 시행 효과를 지원하고 정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보완적 규정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교육청 제출 의견을 보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소지가 아닌 ‘지도’에 방점이 있음. 이에 대한 교육청 의견은? (이효원 의원)
  -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와 관련해서는 소양 교육 측면에서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 지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임.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 생활규정에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조례는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조례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김경훈 의원)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생활지도”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4. “학생생활규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중에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을 말한다.
5. “스마트기기”란 정보통신망 또는 다른 장치에 연결되어 음성·영상·데이터 등을 주고받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 단말장치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자기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에 대한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의견을 토대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교별·대상별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
3.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필요한 소양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개발·보급
4.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학교장, 교원 등 교육·연수 실시
5.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제작·보급)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을 지도하는 학교장과 교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학칙 등 관련 기준을 정하거나 적용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연수) 교육감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